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17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정준호 · 김준혁 · 박희승  
조인철 · 박상혁 · 염태영  
안태준 · 백선희 · 양부남  
이춘석 · 백승아 · 안도걸  
박해철 · 박균택 · 박용갑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 및 정주 인구에 대한 양질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같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구로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지정 특례가 있지 않는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 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3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u>  <u>공급촉진지구에 관한 특례) 기</u>  <u>업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u>  <u>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u>  <u>역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에</u>  <u>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u>  <u>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u>  <u>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u></p>